

**영등포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10.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에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영등포지역 기무담당관을 추가
- 안 제10조제1항에는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담당 주사에서 동장으로 격상 운영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안 제3조제3항에

우리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국군기무부대 영등포지역 담당관을 추가

- 안 제10조제1항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 담당주사에서 최종 지휘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하였음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기타 내용 중 “규정에 근거하여”를 “에 따라”로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0. 26.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1]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 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3.31, 2006.5.30>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